

## 》 TANK내 스프레이 도장 작업 중 폭발

업 종	조선업
기 인 물	작업등
생 산 품	선박건조 및 수리
재해유형	폭발
피해정도	인적 물적
	사망 3명
	—



### 1. 재해발생개요

OO조선(주)에 건조 중인 7만5,000톤급 석유화학운반선 선체 앞쪽에 위치한 포프탱크에서 2개조 4명이 투입되어 스프레이 도장 작업 중 포프탱크 내부에서 도장 유증기가 폭발하여 피재자 3명이 사망한 재해

### 2. 재해발생과정

피재자 4명이 OO조선(주)내 안벽에서 건조 중인 7만 5,000톤급 석유화학운반선 선체 앞쪽에 위치한 포프탱크에서 2개조 4명이 투입되어 스프레이 도장 작업 중 포프탱크 내부에서 유증기가 폭발하여 포프탱크 하부에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사망

### 3.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

#### 가. 재해발생원인

- (1) 탱크 내 밀폐된 장소에서 스프레이 작업 시 비방폭형 전기설비 사용
- (2) 환기 미실시
- (3) 안전작업허가서를 무시한 채 작업 실시

#### 나. 예방대책

- (1) 탱크 내 밀폐된 장소에서 스프레이 작업 시 방폭구조 전기설비 사용
- (2) 탱크 용량에 맞는 환기설비 사용
- (3) 작업자 지휘, 감독철저



### 4. 법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나.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### 관 리

밀폐공간사고 예방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	작업자 지휘 감독 실시
밀폐공간사고 예방 프로그램 미수립	작업자 지휘 감독 미실시
안전작업허가서 없이 작업	표준안전수칙 미준수
안전작업허가서 발부 후 작업	표준안전수칙 준수

### 사람

### 설비

밀폐공간에서 방폭형 전기설비 사용	탱크 용량에 맞는 환기 설비 사용
비방폭형 전기설비 사용	환기설비 미사용
밀폐작업시 유해가스 환경 미실시	작업전 위험예지활동 미실시
밀폐작업시 산소농도 측정 및 유해가스 제거	작업전 위험예지활동 실시

### 작업방법

재  
해

# 》 원목 제재용 대차 청소작업 중 협착

업 종	목제품제조업
기 인 물	원목 제재용 대차
생 산 품	합판
재해유형	협착
피해정도	사망 1명
인적 물적	-



원목 제재용 대차  
합판  
협착  
사망 1명

## 1. 재해발생개요

피재자가 작업시작 준비중 이전작업 후, 쌓인 톱밥을 청소하기 위해 기계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원목 제재용 대차와 이동용 컨베이어 부위에서 작업 중 원목 제재용 대차의 불시 운행으로 대차와 컨베이어 사이에 협착하여 사망한 재해

## 2. 재해발생과정

원목 제재기로 원목을 1차 절단작업 시 많은 톱밥 및 분진이 발생되어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청소작업을 실시하던 중 대차가 불시 운행되어 청소 중이던 피재자가 기계와 컨베이어 부위에 흉부가 협착하여 사망

## 3.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

### 가. 재해 발생원인

- (1) 안전수칙 미준수
- (2) 비정상 작업 안전수칙 미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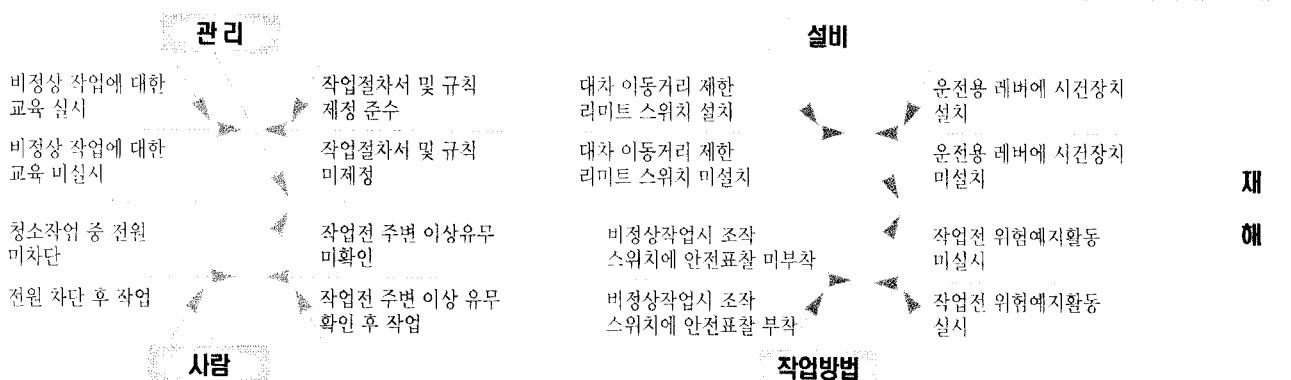


### 나. 예방대책

- (1) 비정상작업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
- (2) 작업 전 주변 이상유무 확인 및 안전조치 철저
- (3) 이동용 대차 이동거리 제한을 위한 리미트 스위치 설치

## 4. 법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나.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사람

작업방법

# ACB 부품 교체 작업 중 추락

업종	기타제조업
기인물	고소작업대
생산품	바나듐, 몰리브덴
재해유형	추락
피해정도	인적 물적
	사망 1명
	-



## 1. 재해발생개요

피해자가 ACB부품 교체 작업을 위하여 지게차를 운전하여 안전난간이 부착된 고소작업대에 부품을 싣고 탑승하여 위로 올린 후 작업 장소에 내려놓고 지게차 포크를 내리는 과정에서 고소작업대에서 추락,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 사망한 재해

## 2. 재해발생과정

수전설비개폐기 설치공사 실시 후 배소로를 기동하면서 전원이 차단되어 복구 후 가동, 다시 전원이 차단되어 ACB 교체작업이 필요하게 되어 작업 실시 중 재해가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ACB 부품을 수전반에 옮겨주고 지게차 포크를 내리는 과정에서 고소작업대가 심하게 상하로 흔들리며 재해자가 중심을 잊고 바닥으로 추락,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

## 3.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

### 가. 재해 발생원인

- (1) 고소작업에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실시
- (2) 지게차 무자격자 운전
- (3) 고소작업에 따른 보호구 미착용



### 나. 예방대책

- (1) 고소작업의 높이에 적합한 고소작업용 작업대 사용
- (2) 지게차는 무자격자 및 외부인의 운전 금지
- (3) 고소작업에 따른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 실시

## 4. 법규[반사율]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나.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## 관리

유자격자 지게차 운전  
무자격자 지게차 운전

작업지휘자 배치 후  
작업  
작업지휘자 미배치

## 설비

고소작업대에 작업자  
탑승 금지  
고소작업대에 작업자  
탑승

## 재

고소작업 시 안전보호구  
미착용  
고소작업시 안전  
보호구 착용 철저

작업절차서 및 규칙  
미준수

지게차를 고소작업에 이용

작업시작전 위험예지  
활동 미실시

## 해

높이에 맞는 적절한  
준수 철저

작업시작전 위험예지  
활동 실시

## 사람

## 작업방법

## 〉 재생골재(모래) 붕괴에 의한 매몰 질식

업 종	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
기 인 물	토사붕괴
생 산 품	재생골재
재해유형	붕괴
피해정도	인적 물적
	사망 1명
	-



### 1. 재해발생개요

피자자가 컨베이어 사이에 이물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려고 컨베이어 사이로 들어간 사이 주변에 적재되어 있던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, 질식하여 사망한 사례

### 2. 재해발생과정

일용직인 피자자가 제1공장 선별기 컨베이어 밸트 하단부 이물질 및 슬러지 분리작업 중 이물질을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해 컨베이어로 들어간 사이, 적재(최고높이 약30m)되어 있던 토사가 붕괴(높이 약5m 지점 붕괴)되어 피자자가 매몰, 질식하여 사망

### 3.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

#### 가. 재해 발생원인

- (1) 과도한 토사 적재
- (2) 옹벽 및 흙막이지보공 미설치
- (3) 관리감독자 관리 미흡



#### 나. 예방대책

- (1) 자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옹벽 및 흙막이지보공 등을 설치
- (2) 표준작업안전수칙 제정
- (3) 안전작업 유도자 배치후 작업

### 4. 법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나.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☺

### 관 리

신규채용자(일용직) 작업 배치전 교육 실시	작업자회자 배치 후 작업
신규채용자(일용직) 작업 배치전 교육 미실시	작업자회자 미배치
작업시작전 위험예지 활동 미실시	재해작업절차서 및 규칙 미준수
작업시작전 위험예지 활동 실시	작업절차서 및 규칙 준수 철저

### 사람

옹벽 및 흙막이지보공 설치	배수로 및 차수벽 설치
옹벽 및 흙막이지보공 미설치	배수로 및 차수벽 미설치
과도한 토사 적재	토사적재 구매불안전
안전한 토사 적재 기준 준수	안전한 구매로 토사적재

### 작업방법

재  
해